

세금 보고를 하여 환급금을 받으십시오.

연방 근로소득세 공제, 자녀 세액공제, 또는 자녀와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수천 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올해부터 한가지 이상의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, 예전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.

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:

- 1 **자격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.**
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
TaxOutreach.org/TaxCredits 를
- 2 **세금에 대한 무료 도움 알아보기**
평상시 세금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
GetYourRefund.org or 를 방문하거나
또는 800-906-9887 로 전화하여
알아볼 수 있습니다.
- 3 **세금 보고를 하십시오.**
4 월 18 일까지 세금 보고를 무료로
도와드립니다.

세금 보고 예약당일 필요한 문서

- 사진이 포함된 유효한 신분증
- 사회보장 카드, 사회보장번호 확인 편지, 또는 세금 보고에 기재된 사람들의 ITIN (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)
- W-2 또는 1099 양식
- 1095-A 양식
- 양육비 지급 기록 (만일 자녀와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)
- IRS 편지 6419, 선불 자녀 세액공제액 등 IRS 통지서



자세한 내용은
TaxOutreach.org/TaxCredits 를
방문하거나 또는 IRS 전화번호
1-800-829-1040으로 연락 하십시오.



제가 자격대상이 됩니까?

사상 최초로, 더 많은 분이 연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 보고를 할 때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근로소득 세액공제 (EITC): 예전엔 받을 대상이 아니었어도 2021년에 일하셨으면 이제 E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자녀 세액공제 (CTC): 2021년 세금 연도에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거의 모두 CTC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은퇴자, 장애인, 또는 예전엔 받을 대상이 아니었어도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2021년에 CTC 선불액을 받았더라도 세금 보고를 하셔서 전액 공제를 받으십시오.

자녀와 부양가족 세액공제 (CDCTC): 자녀 양육비와 성인 부양가족 병간호비를 내는 수백만 명의 가정들이 CDCTC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공공혜택: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SNAP (푸드스탬프), SSI(추가 보장 소득), 메디케이드, 현금보조금, 또는 공립주택 등 연방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만일 귀하가 세금환급을 저금한다 해도, 환급을 받고 난 후 12개월동안 연방 자금 혜택 프로그램의 자원/자산 한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.

자녀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EITC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.

나이: 귀하가 19세 이상 일 경우 2021년에 나이가 19세-23세 사이이며 5개월 이상 학생 신분 이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합니다.

2021년도 수입: 귀하의 소득이 \$21,430 미만이면 (부부일 경우는 \$27,380) EITC를 \$1,50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엔 세 종류의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.

- ▶ **EITC:** 신청자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가 유효한 사회보장번호 소지자인 경우
- ▶ **CTC:** 본인의 SSN은 없더라도 신청서에 기재한 자녀가 SSN 소지자인 경우
- ▶ **CDCTC:** 본인의 SSN은 없더라도 신청서에 기재한 자녀가 SSN 소지자인 경우

자녀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경우 세 가지 종류의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.

거주요건: 부양자녀가 2021년도에 귀하와 절반 이상의 날을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.

자녀의 나이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.

- ▶ **EITC:** 2021년 12월 31일 날짜 기준으로 18세 미만일 경우 (풀타임 학생은 24세 미만이며 영구장애아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.)
- ▶ **CTC:** 2021년 12월 31일 날짜 기준으로 17세 미만일 경우
- ▶ **CDCTC:** 2021년 12월 31일 날짜 기준으로 13세 미만일 때 또는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부양가족일 경우

2021년 소득

- ▶ **연방정부 CTC는,**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 수입 요건이 없습니다 5세 미만 자녀는 \$3,600까지, 6세-17세 사이의 자녀에 한해서는 \$3,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- ▶ **연방정부 EITC를 받으려면,** 다음 한도보다 수입이 적어야 합니다.

자녀의 수	수입이 다음 금액보다 적은 독신근로자:	수입이 다음 금액보다 적은 부부근로자:	EITC의 최고 액수는 :
자녀 1명일 때	\$42,158	\$48,108	\$3,618
자녀 2명일 때	\$47,915	\$53,865	\$5,980
자녀 3명 이상일 때	\$51,464	\$57,414	\$6,728

- ▶ **연방정부 CDCTC환급액은** 자녀의 수, 가족 수입, 양육비 등에 따라 다릅니다.

자녀의 수	2021년 양육비 금액	수입	최대 공제액
자녀 1명일 때	\$8,000까지	\$0-\$125,000	\$4,000
		\$125,000-\$183,000	다양합니다
		\$183,000-\$400,000	\$1,600
자녀 2명일 때	\$16,000까지	\$0-\$125,000	\$8,000
		\$125,000-\$183,000	다양합니다
		\$183,000-\$400,000	\$3,200